

[別表의3] <改正 1970.1.1>

綠地地域안에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

- (1) 農業·林業·畜産業을 目的으로 당해 地域안의 土地 또는 原料材를 이용하는 業務에 쓰이는 建築物로서 그 建築面積이 垞地面積의 10分の 2未滿인 것
- (2) 前號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の 居住의 用에 供하는 建築物로서 그 建築面積이 垞地面積의 10分の 2未滿인 것
- (3) 公園·運動場·墓地類의 施設에 附屬되는 觀覽席·休憩所·脫衣場·關係事務所·公衆便所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그 施設의 機能을 다하는데 필요한 建築物
- (4) 住宅, 日常生活에 필요한 店鋪, 寺院, 教會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로서 그 建築面積이 垞地面積의 10分の 2未滿인 것
- (5) 學校·圖書館·公會堂·病院·託兒所·養育院 기타 이와 類似한 公益上 필요한 建築物로서 그 建築面積이 垞地面積의 10分の 2未滿인 것